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목 차



I. 개요

1. 책자 소개	1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현황	2

II. 사업장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1-1. 경영자 리더십	8
1-2. 근로자 참여	11
1-3. 위험요인 파악	13
1-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15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17
1-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19
1-7. 평가 및 개선	21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2-1. 작업장 일반

2-1-1.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26
2-1-2. 사다리	27
2-1-3. 통로	29

2-2. 기계기구·설비

2-2-1. 기계·기구(일반)	30
2-2-2. 지게차	31
2-2-3. 파쇄기 또는 분쇄기	32
2-2-4. 컨베이어	33
2-2-5. 압축기	35
2-2-6. 크레인	36
2-2-7. 집게차(집게크레인)	37
2-2-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덤프트럭 등)	38
2-2-9.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39
2-2-10. 폐기물 수거차량(압착진개차량)	40

2-3. 위험작업

2-3-1. 화기·용접작업	41
2-3-2. 전기작업	42
2-3-3. 밀폐공간 작업	44

2-4. 보건

2-4-1. 유해화학물질	45
2-4-2. 소음 또는 진동	46
2-4-3. 고열·한랭	48
2-4-4. 근골격계질환	49
2-4-5. 근로자 건강관리	50
2-4-6. 응급조치	51

[참고 1]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주요 사고사례

[참고 2] 안전보건자료 활용 가이드

[참고 3]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참고 4]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I. 개요

1 책자 소개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우리 부는 지난 2021년 8월, 10월에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이하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과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를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는 전반적인 산업계 업무 현장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습니다. 그 후속인 이 자율점검표는 최근 3년간 사고재해자와 사고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에 맞추어 세부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안전보건관리체계’는 2021년 8월에 발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의 내용을 기반으로 사업장에서 손쉽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7가지 핵심요소별 체크리스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위험요인별 세부 체크리스트’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서 관리해야 하는 위험 기계, 유해인자, 위험 작업 등 주요 위험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크리스트 후단에는 추가적인 진단 및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안에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된 지침 및 안내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사업주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현황과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위험요인이 빠짐없이 포함된 것은 아니며 사업장에 따라 체크리스트의 일부 내용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체크리스트 항목을 추가하는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활용하시길 권장합니다.

2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현황

1. 폐기물 처리업종의 구분

폐기물이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칼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폐기물 처리업종*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최종처리업	폐기물 종합처리업
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장소로 운반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기계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	폐기물 최종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리	폐기물 처리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의 중간 처리와 최종처리를 함께하는 영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① 381. 폐기물 수집, 운반업 ② 382. 폐기물 처리업 ③ 383. 해체, 선별 및 원료 재생업으로 구분

2. 폐기물의 분류 및 처리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이외의 폐기물로 가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로, 가정에서 일련의 개보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합니다.
-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것을 제외한 폐기물을 수거·운반하여 적환장에 모은 다음, 종류에 따라 매립하거나 소각처리합니다.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 일반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며,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합니다.
- 사업장폐기물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에 의해 수거된 뒤 소각 등의 중간처리 과정을 거쳐 처리합니다.



그림 1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류

□ 폐기물 처리

- 폐기물 처리는 기능적으로 ①발생억제 ②재활용 ③중간처리 ④최종처리의 4단계를 거칩니다. 중간처리는 파쇄·압축·고형화·여과·중화·소각·흡착·소화 등의 물리·화학·생물학적 공정을 말하며, 최종처리는 매립 또는 해양배출 등의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의 위험요인

□ 주요 재해발생형태

- 폐기물 수집 또는 처리작업 시 떨어짐, 넘어짐, 끼임 및 감김, 부딪힘, 찢림, 절단·베임·찢림 등 다양한 재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망사고 현황

- 컨베이어 정비·보수작업 중 끼임, 파쇄·분쇄기에 폐기물 투입 중 끼임 등 고정설치된 위험설비(컨베이어·파쇄기 등) 및 하역차량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 위생및유사서비스업(산재보험 적용사업) 산재통계 현황('16~'20년)

<기인물별 폐기물처리업체 사고사망 현황(최근 5년)>

(단위: 명)

기인물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9	26	18	23	17	15
특장차*, 트럭 등 차량	19	10	1	3	2	3
로더, 백호 등 건설기계	10	2	2	1	1	4
저장탱크, 용기 비압력용	5	1	0	4	0	0
달비계	5	0	1	3	0	1
상세정보 부족한 육상교통수단	5	2	1	0	1	1
벨트 콘베이어	4	0	2	1	1	0
지게차	4	2	0	1	1	0
택시, 승용차	4	1	1	0	1	1
옥외바닥 및 지표면	2	2	0	0	0	0
모터보트, 요트	2	0	0	2	0	0
분류불능	2	0	1	1	0	0
분쇄기, 파쇄기	2	0	1	1	0	0
폐가스·집진, 폐기물 처리설비	2	1	0	0	1	0
곤충, 거미류	2	1	0	1	0	0
버스	2	1	1	0	0	0
나무	2	0	0	0	2	0
기타 건물·구조물 등	2	0	1	0	0	1
기타	25	3	6	5	7	4

* 압착진개차(쓰레기수거차)에 의한 사고가 6건 발생

<발생형태별 폐기물처리업체 사고사망 현황(최근 5년)>

(단위: 명)

발생형태	계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9	26	18	23	17	15
부딪힘	31	11	6	3	4	7
떨어짐	22	2	2	8	6	4
끼임	15	3	4	4	2	2
산소결핍	6	0	2	2	0	2
물체에 맞음	6	1	1	1	3	0
빠짐·익사	4	1	0	2	1	0
갈림·뒤집힘	3	2	1	0	0	0
동물상해	2	1	0	1	0	0
이상온도 접촉	2	1	1	0	0	0
넘어짐	2	2	0	0	0	0
화재	1	0	0	1	0	0
무너짐	1	0	0	0	1	0
화학물질누출·접촉	1	1	0	0	0	0
사업장내 교통사고	1	0	0	1	0	0
분류불능	1	0	1	0	0	0
기타	1	1	0	0	0	0

Ⅱ. 사업장 자율점검표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1.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

1-1. 경영자 리더십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자가 확고한 '리더십'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사업주가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경영의 우선되는 가치로 삼고 있다.			
2. 사업주의 안전보건 목표와 개선의지를 담은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3. 경영방침에 사업장 유해·위험 및 규모의 특성, 모든 근로자 안전보건확보, 법규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를 포함한다.			
4.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인트라넷·게시판·작업현장 등에 게시 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5.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하청업체,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도 알고 있다.			
6.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7. 주기적으로 사업주(CEO) 주재의 안전보건관련 회의를 진행하여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에 필요한 자원을 확인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8. 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하고,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한다.			
9.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인력을 법정 최소요건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한다. <참고1>			
10.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 조직의 제안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1.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1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은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만의 업무가 아닌 최고책임자와 관리자의 기본적인 업무임을 명확히 한다.			
13.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내부규정에 안전보건과 관련한 업무절차를 정하고 있다.			
14. 구성원들이 안전보건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15. 사업주는 안전보건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참여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G-107-2013) 안전보건 리더십에 관한 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경영자 리더십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4.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그 편성된 용도에 맞게 집행하도록 할 것
 - 가.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 나. 제3호에서 정한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 다.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6.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를 배치할 것. 다만, 다른 법령에서 해당 인력의 배치에 대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배치해야 할 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1-2. 근로자의 참여

성공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위해서는 잠재된 위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현장 작업자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주요 내용, 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등을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다.			
2. 사업장 내 유해·위험기계·기구 및 물질, 위험장소 등을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발생 현황 등을 공개하여 대부분의 근로자가 알고 있다.			
4. 안전보건 확보와 관련 사업장 내 구성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알린다.			
5.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급인·수급인 안전보건 협의체 등을 통해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			
6. 작업 전 안전미팅(TBM), 안전제안활동, 안전보건신고함 등 법적 절차 외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운영한다.			
7. 위험요인 파악 및 제거·대체·통제방안 마련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8. 위험요인별 재해 발생 시나리오 및 조치계획 수립 시 해당 작업과 연계된 근로자를 참여시킨다.			
9. 위험요인 신고, 제도개선 제안 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10. 위험요인 신고·제안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			
11. 신고 및 제안에 대한 조치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근로자 참여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1-3. 위험요인 파악

산업재해 예방은 위험요인 파악에서 시작합니다. 위험요인과 위험의 정도를 제대로 알고만 있어도, 경각심을 가지고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경영자·관리자, 현장 작업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험요인을 주기적으로 파악한다.			
2. 근로자뿐만 아니라 파견업체, 공급·판매업체, 고객 등 모든 구성원이 위험요인을 신고·제보할 수 있는 절차를 운영한다.			
3.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4. 동종업체의 산업재해 사례 및 근로자 건강진단결과를 참고하여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5. 작업장 전체에서 파악한 위험요인을 유형별로 정리한다.			
6. 보유하고 있는 위험기계·기구·설비, 유해·위험 화학물질 현황을 관리대장 등을 통해 관리한다.			
7.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화학물질 도입 시 또는 설비변경 시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절차를 두고 관리한다.			
8. 위험장소에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하고, 출입 및 작업시 별도로 관리하는 절차가 있다.			
9. 작업방법을 고려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10. 정비·보수 등 비정형 작업의 경우 수시위험성평가(작업안전분석 기법을 활용한 위험성평가) 등을 실시하여 작업 위험을 파악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위험요인 확인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4.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 ‘사람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날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각각의 위험요소에 대해 사고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은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여 위험의 정도를 평가한다.			
2. 위험요인 우선순위를 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한다.			
3.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가 참여하고, 사업주의 검토가 이루어진다.			
4.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제거 → 대체 → 통제 → 보호구 순으로 검토한다.			
5. 위험요인별 개선방안 마련 시 가능한 공학적 통제방안 이상으로 복수의 방안을 마련한다.			
6. 위험요인별 개선방안이 결정되면, 개선시기, 예산·인력 배정방안, 담당자 지정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7.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교육하고 이행한다.			
8. 보유하고 있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한 점검·정비 절차가 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9. 새로운 기계·기구·설비 도입, 화학물질 변경, 운전조건 변화 등 공정 변경 시 사전에 안전을 고려하는 절차가 있다.			
10. 위험작업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한다.			
11. 비정형 작업 등 위험작업 시 작업허가제, LOTO(Lock Out, Tag Out)*절차를 운영한다. * Lock Out: 잠금장치, Tag Out: 작업중임을 표시			
12. 모든 구성원에게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위험성평가 지침 해설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X-60-2013) 설비배치 계획 및 변경시의 리스크 평가지침
- KOSHA GUIDE(P-98-2017) 변경요소관리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P-93-2020) 유해 위험설비의 점검 정비 유지관리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P-94-2019) 안전작업허가 지침

〈위험요인 제거·통제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1-5. 비상조치계획 수립

중대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위험요인별로 어떤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여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재해요인을 파악한다.			
2. 작업 중 발생 가능한 사고의 유형 및 형태, 사고 발생 시 초래될 결과 등을 확인·예측한다.			
3. 공장별·현장별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를 작성한다.			
4.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계획을 작성하여 관계 부서, 공정, 유해·위험물질, 재해유형, 원인, 피해범위 등을 목록화하여 관리한다.			
5. 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되어 있다.			
6. 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7.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되어 있다.			
8. 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되어 있다.			
9. 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10. 비상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적정성을 검토한다 (반기1회 이상).			
11. 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하여 조치계획을 개선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P-101-2012) 비상조치계획 수립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비상조치 계획 수립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1-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관리체계는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을 평가하는 절차가 있고, 이에 따라 선정이 이루어진다.			
2.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이 적절하여, 그 결과 안전보건 능력을 갖춘 자가 선정된다.			
3.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공사기간 등에 대한 검토 기준이 있다.			
4.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재예방 능력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5.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안전·보건 관리비용 검토 후 비용이 지급되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6.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적정 공사기간 검토 후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반기1회 이상).			
7.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8.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가 있고, 그에 대한 검토 및 처리결과를 근로자에게 공유한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9. 도급·용역·위탁 업무 시 유해·위험한 작업의 경우 안전작업허가제를 통해 관리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안전보건 점검을 실시한다.			
10. 도급·용역·위탁받은 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등 안전보건활동의 적정성을 검토·확인한다.			
11. 도급·용역·위탁 업무 완료시 안전보건 업무 평가를 실시하여 이를 활용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P-95-2016) 도급업체의 안전관리계획 작성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도급·용역 안전보건확보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가.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절차
- 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
- 다. 건설업 및 조선업의 경우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공사기간 또는 건조기간에 관한 기준

1-7.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점을 파악·개선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전 부서 및 구성원을 대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를 평가한다.			
2. 안전보건에 관한 평가 시 근로자 의견 검토 및 반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보건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4.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계획·내부규정에 따라 운영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5.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원인을 찾기 위해 조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조사한다.			
6.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의 근원적인 원인을 찾기 위해 업무절차 및 자원배정의 적정성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한다.			
7.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팀 구성, 점검 종류, 점검 주기, 점검 방법 등을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8. 점검결과 발견된 문제 및 개선방안은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전파한다.			
9. 도출된 문제 및 개선방안 마련시 근원적인 문제점이 개선되도록 충분한 자원을 배정한다.			
10. 점검 결과 마련된 개선방안은 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방안을 포함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다.			
11. 중대재해처벌법상에 규정된 정기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련 점검·평가 의무를 이행한다. (유해·위험요인 개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근로자 의견 청취, 비상조치 매뉴얼, 도급·용역·위탁)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평가 및 개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규정〉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5.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라 한다)가 같은 조에서 규정한 각각의 업무를 각 사업장에서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게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줄 것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이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할 것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동 자료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분야는 제외하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I. 사업장 자율점검표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2. 분야별 위험요인 파악 및 통제

2-1. 작업장 일반

2-1-1. 작업장 청소·청결·조도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작업으로 인해 작업장이 흐트러지거나 오염될 수 있는 장소를 파악한다.			
2. 작업장의 청소 또는 정리 작업, 오염물 처리 시 개인보호구와 작업 공구·도구를 제공한다.			
3.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작업 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4. 청소 및 정리 작업을 위한 조도를 확보하고 있다.			
5. 무거운 물건 등 중량물 취급할 경우 적절한 작업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6. 5kg 이상의 중량물 취급 및 보관장소에 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하였다.			
7. 작업장 청소 시 분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분진 흘날림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였다.			
8. 인체에 해로운 물질 및 부패하기 쉬운 물질로 인해 작업장이 오염될 수 있는 장소에 수시로 청소한다.			
9. 물이나 그 밖의 액체를 사용하여 세척 및 소독하는 곳의 배수는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			
10. 청소 시 발생한 오물 처리를 위한 장소를 지정하였다.			
11.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 위험이 없도록 작업장 바닥 등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다.			
12.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서는 흡연,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13. 작업장의 출입구는 근로자가 쉽게 여닫을 수 있도록 설치되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E-148-2015) 작업장 조명기구의 선정, 설치 및 정비에 관한 기술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1-2. 사다리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이동식사다리 사용 시 이동통로용 사다리(일자형)와 작업용 사다리(발붙임, A형)를 구분하여 사용한다.			
2. 사다리 기둥, 작업 발판의 상태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확인한다.			
3. 사다리 작업시 2인 1조로 작업한다.			
4. 사다리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 올라가는 등 적절한 길이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5. 벌어짐 방지장치, 발판 미끄럼 방지 고무패드가 장착된 사다리를 사용한다.			
6. 사다리의 넘어짐·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 또는 바닥에 설치한다.			
7. 바닥과 사다리는 가능한 한 수평을 유지하여 작업한다.			
8. 짧은 사다리 길이를 늘이기 위해 겹쳐 이어 사용하지 않는다.			
9. 사다리의 사용 높이를 임의로 높이기 위해 상자, 리프트, 그 밖에 불안정한 곳에 설치하지 않는다.			
10. 보행자 통행로, 차량 도로, 문이 열리는 곳 등에서 작업할 때 사다리와의 충돌 가능성을 확인한다.			
11. 금속사다리의 경우 내부식성 재료로 만들어졌거나 부식방지 조치가 되어 있다.			
12. 작업 전 사다리 주위 전선, 전기설비 등 감전위험을 확인하고, 부도체 재질의 사다리를 사용한다.			
13.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다리 작업시 안전모(턱끈 조임)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한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4. 작업자는 균형을 잃거나 추락의 가능성이 있는 무거운 짐이나 장비를 들고 사다리를 오르내리지 않는다.			
15. 사다리 작업 시 하중이 사다리의 최대 설계하중을 넘지 않도록 준수한다.			
16. 사다리에 기름과 유지 등이 묻었다면 해당 물질을 용제 또는 물 세척으로 제거한다.			
17. 사다리는 수시로 점검하고, 결함이 있는 것들은 수리나 재구매를 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130-2020) 이동식 사다리의 제작과 사용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1-3. 통로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사업장내 또는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가 설치(구분)되어 있다.			
2. 통로의 바닥 또는 단부에 추락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덮개, 방호울 등)이 설치되어 있다.			
3. 통로 상부(2m 이내) 및 바닥에 장애물이 없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4. 통로의 상부에 낙하물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시설(방호선반 등)이 설치되어 있다.			
5. 사업장내 통로,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에 적정 조도(75럭스 이상)를 유지한다.			
6. 상부 작업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고정되어 있으며, 설치간격, 통로폭 등 작업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임시로 설치한 통로(작업발판 등)의 재료는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이 잘 되어 있다.			
8. 통로의 주요부분에 통로표시와 안전표지를 설치하였다. * 안전표지 예시: 보행중 휴대폰 사용금지, 지게차 충돌주의 등			
9. 통로(작업발판)의 단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10. 작업자가 추락 위험이 있는 통로에서 이동하거나 작업할 경우 안전대를 착용하고, 안전대 부착설비에 고리를 걸도록 관리한다.			
11. 통로의 구조(가설통로, 사다리식 통로, 갱내통로, 계단 등)가 각 종류의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			
12. 안전시설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훼손된 시설은 즉시 유지보수한다.			
13. 비상시 작업장 내에서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적절히 마련되었다.			
14. 비상구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곳에 부착하였다.			
15. 작업장내 비상 대피경로를 표시하고, 근로자가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85-2015)작업장의 통로 및 계단 설치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2. 기계·기구

2-2-1. 기계·기구(일반)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기계와 장비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2. 모든 기계와 장비는 청결하게 관리되고 적절히 유지보수된다.			
3. 운전 중인 크레인·컨베이어 등에 근로자를 탑승시키지 않도록 경고표지 부착, 작업구역 설정 등 조치하였다.			
4. 회전축·기어·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울 등을 설치하였다.			
5.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에 동력차단장치를 설치하고,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고 조작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였다.			
6. 기계의 운전을 시작할 때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확인한 후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였다.			
7.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기계에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하였다.			
8. 기계 또는 방호장치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반드시 정비한 후에 근로자가 사용하도록 한다.			
9. 기계의 정비·청소·검사 또는 조정 작업 등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Lock Out Tag Out 등)를 하고 있다.			
10. 기계 등에 설치한 방호장치를 해체하거나 방호장치의 기능을 임의로 정지하지 않는다.			
11. 감전의 위험이 있는 충전부는 방호조치가 되어있다.			
12. 기계 등을 제조 당시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21-2011) 소규모 작업장 내의 안전보건에 관한 안전가이드
- KOSHA GUIDE(M-26-2013) 끼임절단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지침
- 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2. 지게차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전조등, 후미등, 방향지시기 및 후진경보장치, 경광등의 정상작동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2. 백레스트 및 헤드가드가 파손되지 않았다.			
3. 지게차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관리한다.			
4. 지게차 운전원에게 작업방법, 작업 순서, 운행 경로 등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5. 지게차 운전시 운전원이 안전벨트를 착용하도록 한다.			
6. 지게차에 화물을 적재할 경우에는 운전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한다.			
7. 지게차 작업 반경 내에 다른 작업자가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8. 작업장을 이동할 때 제한속도를 지정하였다.			
9. 후진, 회전 등 장비 이동 시에 근로자 충돌방지를 위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혹은 후방감지기를 갖추었다.			
10. 지게차 허용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하지 않는다.			
11. 지게차 운행중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한다.			
12. 하역운반 작업장 바닥은 평탄하고 견고한 곳으로 별도로 지정한다.			
13. 지게차 작업장 이동경로에 적재물을 방치하지 않는다.			
14. 지게차 출입통로, 교차로 등 시야확보가 필요한 장소에 반사경, 신호음장치 등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15. 작업 종료 후 지게차 열쇠는 별도 관리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85-2015)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G-131-2020)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건설업,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안전보건 나침반(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3. 파쇄기 또는 분쇄기(이하 파쇄기)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자율안전확인신고(KCs)된 파쇄기를 설치하였다.			
2. 파쇄기 상부 진입 통로 및 승강계단에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이 견고하게 설치되었다.			
3. 파쇄기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4. 작업시작 전 파쇄기 투입구 덮개,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등 방호설비의 체결 유무 등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5. 비상정지스위치는 돌출형(적색) 구조로 적합한 위치에 설치되었고, 정상적으로 작동한다.			
6. 파쇄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안전작업지침 등에 대한 운전자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7. 파쇄기 작동 중 파쇄기 하부 및 주변 통행을 통제하고, 별도의 점검통로를 이용하여 작업을 확인한다.			
8. 파쇄기 방호장치의 연동장치(interlock system) 기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임의로 해체하지 않는다.			
9. 파쇄기에 파쇄물을 공급할 때는 적절한 크기의 파쇄물을 투입하고, 과다하게 공급되면 파쇄기가 멈추도록 관리한다.			
10. 파쇄기 내부 및 주변 청소를 할 때에는 반드시 전원을 차단하고, 스위치에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한다.			
11. 파쇄기 내부의 이물질 제거 시 안전한 전용의 수공구를 사용하여 제거한다.			
12.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재료를 취급하는 파쇄기의 경우, 국소배기장치 또는 소화장치 등을 설치하였다.			
13. 파쇄기 작업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방진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26-2013) 파쇄기의 방호조치에 관한 기술지침
- 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파쇄기)안전보건VR 끼임재해예방교재(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4. 컨베이어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컨베이어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였다.			
2. 컨베이어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원동기 및 폴리 기능의 이상 유무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3. 보수·정비·청소 등의 작업자는 조작실 운전 담당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4. 비상정지 중 또는 사고로 정지중인 컨베이어를 재가동할 경우에 먼저 정지의 원인 및 고장 장소의 보수상황 등을 확인토록하고 있다.			
5. 작업자에게 트러블 발생 시 대응하기 위한 작업절차 및 방법을 교육한다.			
6. 설계 시의 사용목적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7. 작업 전 컨베이어의 안전운전에 필요한 작업표준, 취급요령, 정비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8. 근로자가 작업 중 접촉할 우려가 있는 구조물 및 컨베이어의 날카로운 모서리·돌기 등은 제거 혹은 방호 조치하였다.			
9. 경사/수직 컨베이어는 정전, 전압강하 등에 의한 화물 또는 운반구의 이탈 및 역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10. 벨트 장력을 유지하기 위한 테이크업 장치가 설치되었고,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고 있다.			
11. 컨베이어 스크레이퍼, 벨트 크리너 등이 설치되고 정상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12. 컨베이어 벨트, 폴리, 롤러, 체인, 체인스프로킷, 스크류 등에 근로자 신체의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발생 부분에 덮개 또는 울이 설치되어 있다.			
13. 테일폴리, 헤드폴리, 리턴롤러 등의 끼임점에 방호울 및 방호 가드가 설치되어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4. 컨베이어 라인에 비상정지장치가 설치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15. 컨베이어 건널다리나 점검통로 주변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16. 컨베이어 하부 끼임 등의 위험이 있는 부분으로 통행금지, 낙하물 방지조치 등을 하고 있다.			
17. 컨베이어 양측에 보수점검을 위한 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18. 컨베이어 주변 통로는 정리정돈 되어 있다.			
19. 컨베이어의 기동·정지 스위치는 명확히 표시되고 쉽게 조작 가능하다.			
20. 컨베이어에 물건 적재 시 편하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1. 근로자가 작동중인 컨베이어 위를 올라가지 않도록 한다.			
22. 컨베이어 롤러 퇴적물 제거 작업 시 설비 가동 중지 후 청소 작업을 하고 있다.			
23. 보수정비 작업시 전원을 차단하고 '조작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01-2012) 컨베이어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5. 압축기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압축기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작업자에게 교육하였다.			
2. 모든 동력전달부(체인, 벨트, 구동축 등)에 방호덮개 등을 설치하여 회전부가 노출되지 않게 조치하였다.			
3. 작업시작 전 압축기 덮개, 방호울, 비상정지장치의 정상 작동 유무 등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4. 압축기 덮개 또는 점검구가 열린 상태에서 압축기가 가동되지 않도록 인터록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개시 전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5. 폐지압축기에서 분배기로의 이동을 위한 출입문은 연동장치가 설치되어 열린 경우 압축기가 작동되지 않는다.			
6. 폐지압축기 호거(Hogger)에는 방호덮개, 방호울 등이 설치되어 접근이 통제되어 있다.			
7. 제어실·제어반을 압축기에서 충분히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였다.			
8. 압축기는 지정된 작업자만 조작하고, 외부인의 접근·작동을 금지한다.			
9. 압축기 수리·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작동(전원)스위치를 off하고 잠금장치(Lock-Out)를 설치한 후, 작업 중임을 표시(Tag-Out)하고 작업하고 있다.			
10. 가연성 압축물을 다루는 경우, 압축물 주변 화기작업을 금지한다.			
11. 유해화학물질(인화성물질 등)이 포함된 재료를 압축하는 경우, 국소배기장치 또는 소화장치 등 취급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저감시키는 조치를 하였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77-2014) 스크랩 압축기 사용 시 안전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31-2020)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6. 크레인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크레인 작업에 대한 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한다.			
2. 작업 시 관리감독자는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클러치 및 운전 장치의 기능 등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있다.			
3.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 정격하중이 2.0톤 이상인 크레인의 안전검사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4. 인양 하물에 적합한 줄걸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5. 크레인을 사용하여 근로자를 운반하거나 달아올린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지 않는다.			
6. 정격하중, 속도, 경고표시 등을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관련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7. 과부하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및 제동장치, 그 밖의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8.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도록 작업한다.			
9. 훅걸이용 와이어로프 등이 훅으로부터 벗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훅해지장치 등)를 사용하고 있다.			
10. 크레인의 수리·점검 시 크레인이 근로자와 접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인을 배치하고, 스톱퍼를 설치하였다.			
11. 인양할 하물을 바닥에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12. 인양 중인 하물 아래로 작업자가 통과하지 않도록 한다.			
13. 인양할 하물이 보이지 않은 경우 작업을 금지하고 있다.			
14. 신호수를 배치하여 주변 근로자를 통제한다.			
15. 근로자 배치 및 교육, 작업방법, 방호장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조치를 실시하였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M-186-2015) 천장주행크레인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M-186-2015)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2-7. 집게차(집게크레인)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집게차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출입을 금지하고 있다.			
2. 급격한 집게차 바디의 회전, 붐대의 신축, 관절의 굴절동작을 금지하고 있다.			
3. 집게차 운전석 탑승용 승강계단 또는 수직사다리를 설치하여 안전하게 탑승하고 있다.			
4. 집게차 운전자에게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중 보호구 착용 여부를 확인한다.			
5. 집게차 바디의 회전, 붐의 신축, 관절의 굴절, 집게의 조작 레버에는 레버명칭을 표기하고, 각 레버의 운동방향은 화살표로 표시하였다.			
6. 작업시작 전 집게차의 유압계통을 점검하여 새는 곳 등이 없는지 확인한다.			
7. 집게크레인 유압시스템 작동스위치는 키(key) 삽입형으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8. 집게차는 용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9.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분리하여 소지하고 있다.			
10. 도로 등 이동 시 상부 간섭물에 걸리지 않도록 집게 붐을 최저 높이로 낮춰서 이동한다.			
11. 고압선 등 전선근전작업 시 절연보호구 지급, 전선방호커버 설치, 이격거리 준수 등 안전조치를 확인한 후 작업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붐 및 관절혼합형 집게 크레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안전보건자료실)

2-2-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덤프트럭 등)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에 따라 작업하도록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2. 작업자의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여부를 확인한다.			
3. 적재함 등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가 탑승하지는 않도록 한다.			
4. 사업장내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5.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시동키를 분리하고, 브레이크, 고임목을 체결한다.			
6. 하역·운반 중인 화물이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에는 근로자의 출입을 금지한다.			
7.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화물 적재 시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한다.			
8.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에 상·하역 작업 시 전도·전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다.			
9.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는 화물의 적재·하역 등 주된 용도 이외로 사용하지 않는다.			
10.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제 작업 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을 지휘·감독한다.			
11. 차량운행 전 주요 안전장치(제동장치, 전조등, 후미등, 경적 등) 확인 및 이상시 조치 후 운행한다.			
12.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13. 폐기물을 하역하는 동안 차량들은 차량 하나의 넓이만큼 서로 떨어지도록 배치한다.			
14. 모든 근로자들은 작업장 내에서 쉽게 눈에 띄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1조에서 제178조
- 폐기물처리업 안전작업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G-131-2020)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2-9. 차량계 건설기계(굴착기, 로더)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다.			
2. 작업 전 건설기계 조종면허 등 운전원의 자격을 확인하고, 지정된 자가 운전하도록 관리한다.			
3.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는 탑승하지 않는다.			
4. 차량계 건설기계는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고 있다.			
5. 운전자가 운전위치 이탈 시 브레이크, 고임목을 체결하고, 시동키를 분리하여 소지하고 있다.			
6. 유도자를 배치하여 근로자와 충돌위험이 없도록 차량계 건설기계를 안전하게 유도하고 있다.			
7. 헤드가드, 전조등, 후방감지카메라, 후진 시 경보기·경광등이 설치되었고,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8. 지정된 운전자의 면허자격을 확인하고, 유자격 운전자 외 운전을 금지한다.			
9.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 위험이 없도록 작업하고 있다.			
10. 사업장내 운행속도를 제한하고, 속도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11. 로더의 작업면 후사경, 경광등, 경보기를 설치하고, 작동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12. 차량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다.			
13.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하부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안전지주, 안전블록 등을 설치한다.			
14. 차량계 건설기계 상부에서 점검 시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를 지급하고, 디딤부는 미끄러짐 방지 처리를 실시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C-48 2013) 건설기계 안전보건작업지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96조에서 제206조

2-2-10. 폐기물 수거차량(압착진개차량)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파카(개폐장치) 작동 시 폐기물을 투입하지 않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파카 작동반경내 출입금지).			
2. 수거 작업자간, 수거작업자와 운전자간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하고 있다.			
3. 폐기물 수거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만 수거함 위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고 있다.			
4. 폐기물 수거차량의 탑승 가능한 지정좌석 외에 탑승하지 않는다.			
5. 폐기물 수거 중 안전모, 안전화, 보호장갑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다.			
6. 폐기물 수거차량은 안전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다.			
7. 폐기물 수거차량이 완전히 멈춘 후 수거작업을 하고 있다.			
8. 폐기물 수거차량의 전조등, 비상등 및 백미러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9. 차량후진 시 유도자 배치 및 후방카메라를 설치하여 수거작업자 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10. 폐기물 봉투 취급 시 날카로운 물체가 있는지 확인한다.			
11. 중량의 폐기물은 2인 1조 작업하고 있다.			
12. 파카 동작반경 하부에서 수리·청소 작업 시 파카의 불시하강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스토퍼 등)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중대재해사례-압착진개차 적재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작업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KOSHA GUIDE(G-131-2020) 생활폐기물 수거 및 처리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기술지침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작업」 환경미화원 작업안전수칙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3. 위험작업

2-3-1. 화기·용접작업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발생하는 화염 또는 스파크 등이 인근 설비·장비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위의 지역을 작업구역으로 표시하였다.			
2. 화기·용접작업 장소에 근로자의 통행·출입을 제한한다.			
3. 화기작업 전에 작업 대상기기 및 작업구역 내에서 인화성 물질 및 독성 물질의 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허가서에 기록한다.			
4. 불꽃을 발생하는 내연설비의 장비나 차량 등은 작업구역 내 근로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5. 화기작업 전 밸브를 차단하거나 맹판을 설치할 때에는 밸브 잠금 표지 및 맹판 설치 표지를 부착한다.			
6. 설비 등 내부에서 화기작업을 수행할 경우에는 배관 및 설비 내의 위험물질을 완전히 비우고 세정한 후에 작업을 수행한다.			
7. 밀폐(제한)공간에서의 작업을 수행할 때에는 작업 전에 밀폐공간 내의 공기를 외부의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치환하는 등의 조치(강제 환기 등) 실시한다.			
8.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또는 용접 방화포 등을 설치하고, 개방된 맨홀과 하수구(Sewer) 등은 덮거나 닫는다.			
9.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기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도중 안전 상태를 확인하도록 한다.			
10. 작업 중에 수시로 가스 농도를 측정한다.(분진이 있는 장소는 분진농도를 추가로 측정)			
11. 화기작업 전에 이동식 소화기 등을 비치한다.			
12. 위 안전조치가 모두 조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 작업을 시작하도록 관리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D-46-2013) 화학공장의 화재예방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 냉동·물류창고 화재사고예방 매뉴얼(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3-2. 전기작업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작업 전로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하고 검전기를 이용하여 충전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전기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의 작업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3.감전위험이 있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설비의 유효성을 장비, 도구를 이용하여 확인하는 점검)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유자격자가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4.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전원 접속부인 충전부가 노출되어 있지 않다.			
5.전기기계·기구 및 설비의 금속재, 철재 등의 외함에 접지시설이 되어있다.			
6.휴대형 또는 이동형 전동기계의 전원에 누전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7.전기기기 외함에 접지된 접지선이 접지극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접지 연속성 유무)			
8.누전여부 체크를 위해 주기적으로 절연저항을 측정하고 기록한다.			
9.주기적으로 접지저항을 측정하고, 접지 저항값이 기준에 적합하다.			
10.용접선,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어 있지 않다.			
11.정전작업 중 타 작업자의 개폐기 오조작 방지를 위하여 분전반 또는 개폐기에 잠금장치나 표지판을 설치하였다.			
12.변전실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하고, 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를 부착하였다.			
13.변전실 등 특별고압 충전전로에 접근한계거리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4. 근접장소에서의 청소 등의 작업 시 접근한계거리를 유지하여 작업하도록 관리한다.			
15. 낙뢰위험지역에 낙뢰에 의한 위험방지를 위해 피뢰침을 설치하였다.			
16. 피뢰침의 접지 저항치를 측정하여 적절한 수준을 유지한다.			
17. 물 등의 도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한 장소에서의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다.			
18. 정전기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설비에 접지, 도전성 재료 사용, 제전장치 등 정전기 제거 조치를 하였다.			
19.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로의 설치·해체·정비·점검 등의 전기작업 (50V초과 또는 전기에너지가 250VA를 넘는 경우)시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20. 충전전로 등의 전기 작업을 할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 절연용 방호구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착용토록 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 KOSHA GUIDE(E-105-2011) 전기작업안전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O-3-2011) 전기설비의 정비를 위한 일반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건설업, 제조업 자율위험평가 가이드라인(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3-3. 밀폐공간 작업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질식위험공간에 출입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2.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작업전·작업중 지속적으로 환기한다.			
3. 구조작업 시 공기호흡기 등 보호 장비를 착용할 수 있도록 작업장 주변에 비치하였다.			
4. 밀폐공간 유해가스, 산소결핍, 화재·폭발 위험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하였다.			
5.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였다.			
6. 작업 시작하는 경우 사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농도 측정에 관한 사항, 응급조치요령, 환기설비 가동 등 안전작업방법, 보호구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을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 등을 통해 알리고 있다.			
7. 산소농도, 유해가스측정기, 환기팬, 공기호흡기와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준비·점검·사용법 숙지를 하였다.			
8. 긴급 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연락체계를 갖추었다.			
9. 감시인은 작업자가 내부에 있을 때는 항상 정위치하며, 필요한 보호 장비와 구조장비를 갖추고 있다.			
10.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였다.			
11. 밀폐공간 작업장소에 근로자를 입장 및 퇴장시킬 때마다 인원을 점검하였다.			
12. 밀폐공간작업을 위해 허가자에게 밀폐공간작업 허가를 받고 있다.			
13. 관리감독자가 밀폐공간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지휘,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75-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X-68-2015) 밀폐공간 위험관리에 관한 기술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 KOSHA GUIDE(H-80-2018)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기술지침
-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가이드(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안전보건자료실)

2-4. 보건

2-4-1. 유해화학물질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사업장에서 발생하거나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분류·파악하고 있다.			
2.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MSDS, 노출시 조치방법 등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3.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별도 지정하였다.			
4.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의 구조는 해당 물질의 유출·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장하는 물질의 종류·온도·압력 및 사용환경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였다.			
5. 근로자에게 적절한 방호조치 및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6. 유해화학물질을 화기나 그 밖에 점화원이 될 우려가 있는 것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7. 유해화학물질 용기(소분용기포함)에 시 물질명, 경고표시 등 내용물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표기하였다.			
8. 인화성 또는 독성물질에 의한 화재·폭발·누출을 미리 감지하기 위한 가스 검지 및 경보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9.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적절한 저장방법을 선정하고, 유해화학물질간의 반응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10.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곳에 응급 시 근로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과 세안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11. 가스경보기가 작동할 경우 조치사항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12. 취급물질에 적절한 소화기를 작업장에 비치하였다.			
13. 배관 연결부, 밸브 등의 연결부에서 물질의 누출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14. 인화성물질을 취급하는 구역은 폭발위험장소로 구분하고, 적절한 방폭설비를 설치하였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K-1-2011) 유해화학물질 저장·운반 및 취급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4-2020) 화재 및 화학물질 누출사고 대응을 위한 비상조치계획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4-2. 소음 또는 진동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사업장의 소음 또는 진동 발생 장소·설비 등에 대해 분류하고 있다.			
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또는 진동에 의한 유해성·위험성 및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고 있다.			
3. 작업환경측정을 통해 노출되는 소음 또는 진동에 대한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4.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출수준 저감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5. 소음 또는 진동 발생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있다.			
6. 소음 발생원의 격리, 차폐 등 소음발생수준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7. 소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청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8. 근로자의 건강검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 의학적 처치 등이 적절히 조치하였다.			
9. 청력보호구는 근로자의 특성과 작업장 환경, 소음발생수준에 맞게 지급되고, 근로자에게 착용법을 교육하고 있다.			
10.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에 대해 청력보존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11. 청력보호가 필요한 곳에 경고판을 부착하였다.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2. 진동 발생 공구는 적절히 유지보수가 되고 있으며, 진동이 많이 발생하는 기구는 교체하고 있다.			
13. 국소진동공구 사용 등 진동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4.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를 지급하고, 작업자가 진동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한다.			
15. 작업자가 진동에 노출되는 시간을 제한하고,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보조기구 등을 활용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75-2015) 사업장 작업환경 평가지침
- KOSHA GUIDE(H-205-2018) 작업환경상 건강유해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지침
- KOSHA GUIDE(H-7-2012) 청력보존프로그램의 효과 평가지침
- KOSHA GUIDE(H-177-2015) 국소진동공구 취급근로자의 보건관리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4-3. 고열·한랭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고열(한랭)의 유해성·위험성을 파악하고, 관리방안을 근로자에게 교육한다.			
2. 작업환경측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고열(한랭) 노출수준을 관리하고 있다.			
3. 측정결과에 따라 적절한 열원 등의 적절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4. 근로자를 배치하기 전 근로자의 건강상태와 특성 등을 고려한다.			
5. 열원의 격리와 작업장내 온·습도 조절을 위한 냉방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			
6. 다량의 고열물을 취급하는 설비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구조로 되어있다.			
7. 비상시 온도를 낮추거나 열을 차단할 수 있는 냉각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8. 작업의 강도에 따른 휴식시간을 적절히 부여하고, 쾌적한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9. 한랭에 따른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휴게공간에 온열기 설치, 따뜻한 음료 비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10. 다량의 고열물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장소 등에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11. 고열 또는 한랭 작업 등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W-12-2017) 고열작업환경 관리지침(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4-4. 근골격계질환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작업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2.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조사를 적절하게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리고 있다.			
3. 근골격계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인간공학적 설계, 인력 작업 보조설비 및 편의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4. 부담작업 종사자 교육(유해요인, 징후와 증상, 대처 요령, 올바른 작업자세, 작업도구, 작업시설의 올바른 사용법)을 실시하고 있다.			
5. 취급 물품의 중량, 취급빈도, 운반거리, 운반 속도 등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시간 및 휴식시간 등을 적절하게 배분하고 있다.			
6. 중량물의 중량과 무게중심을 표시하고 손잡이를 붙이거나 갈고리, 진공빨판 등을 활용하고 있다.			
7. 중량물 취급자에게 올바른 들기 자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8. 서서 일하는 근로자 또는 VDT 작업자에게 적절한 작업대, 작업용 의자, 발 받침대 등의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9.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0.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66-2012)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작업환경개선 지침
- KOSHA GUIDE(H-9-2012)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4-5. 근로자 건강관리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조직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2. 작업장 내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를 파악하여 관리하고 있다.			
3. 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고 있는 작업과 근로자를 파악하고 있다.			
4. 근로자의 건강보호 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5.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6. 근로자 개인별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을 실시하고 이력을 관리하고 있다.			
7. 근로자의 작업 배치시 근로자 개인의 특성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작업에 배치하였다.			
8. 근로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휴식시간을 부여한다.			
9. 작업장의 조도와 온·습도는 적절히 유지되고 있다.			
10. 근로자의 건강관리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등 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G-37-2012) 근로자의 일반적인 건강관리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2-4-6. 응급조치

자가진단 항목	네	아니요	비고
1.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응급상황 발생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고 그 직무를 규정하고 있다.			
3.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비상연락망을 유지하고 있다.			
4. 응급상황 발생시 근로자들은 신고체계와 보고체계에 대해 숙지하고 있다.			
5. 응급상황 발생시 대응할 수 있는 소화기, 응급처치함, 구조장비 등 비상 물품을 구비하고 있다.			
6. 구급함, 구조장비 등 비상물품의 수량 및 보존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자를 지정하고 관리한다.			
7. 응급상황에 대비한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하고 있다.			
8. 응급상황이 완료된 후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다.			

< 추가 참고자료 >

- KOSHA GUIDE(H-187-2016) 산업재해 형태별 응급처치 요령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자료마당-법령/지침정보)

폐기물처리업 사망사고 예방대책

현황 및 특성

- 최근 폐기물처리업체에서 기계·설비 점검 및 청소작업 중 끼임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
- 폐기물처리업체의 보유 공정·설비와 운전 및 청소·정비작업의 방법은 대체로 동일
 - ➔ 주요 사망사고 사례와 안전한 작업방법 전파를 통해 동종업종의 사망사고를 사전 예방

주요 사고사례

2021. 1. 8(금), 충북 청주

피해 사망 1명

사고 개요 폐기를 처리설비를 가동·점검하는 과정에서 출하 벨트컨베이어가 작동되지 않자 재해자가 이를 점검하던 중 해당 컨베이어가 작동되어 컨베이어와 벨트 누름장치 회전판 축 사이에 끼어 사망



2021. 1. 28(목), 인천 서구

피해 사망 1명, 부상 1명

사고 개요 건설폐기물 파쇄작업 종료 후 벨트컨베이어 상부에서 청소 작업 중이던 재해자 2명이 갑자기 작동된 컨베이어 위에 쓰러지면서 컨베이어 끝단 풀리와 컨베이어벨트 사이에 끼어 사망(1명) 및 허부로 추락하여 부상(1명)



2021. 2. 22(월), 인천 서구

피해 사망 1명

사고 개요 건설 폐기물 자력선별기에 장착된 회전벨트에 이물질이 끼어 회전벨트가 멈추자 재해자가 회전벨트 내측으로 상체를 밀어 넣고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던 중 설비가 갑자기 가동되어 벨트와 롤러 사이에 끼어 사망



안전한 작업방법

- 정비·청소·수리 등의 작업 시 기계·설비의 운전 정지
정비 등의 작업 시에는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계를 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장치에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및 작업지휘자 배치
- 위험상황 시 컨베이어를 차단하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비상 시 컨베이어 정지를 위한 비상정지장치를 근로자가 조작할 수 있는 범위에 설치
- 운전 시작 전 근로자 교육 및 작업방법 등 안전조치 실시
근로자 배치·교육, 작업방법, 방호조치 등을 미리 확인하고 위험방지 조치 실시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제89조(운전 시작 전 조치), 제91조(고장난 기계의 정비 등), 제92조(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등), 제93조(방호장치의 해제 금지),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제195조(통행의 제한 등) 등

재해사례
(벨트 컨베이어)

폐기물 이송 벨트 컨베이어의 회전부에 끼임



재활용 건축물 폐기물을 분쇄하여 이송하는 벨트 컨베이어 가동 상태에서 이물질 제거 등의 작업을 하는 도중 회전하는 테일롤러와 컨베이어 벨트 사이에 끼임



재해발생 원인

- 벨트 컨베이어의 구동롤러(테일롤러) 및 컨베이어 장력조정장치에 방호덮개·울 등의 미설치 상태에서 컨베이어가 가동 - 건축 폐기물의 고철 선별 이송 벨트 컨베이어 가동상태에서 청소 등의 작업을 수행하던 인력 파견업체 작업자의 작업복 등이 회전부에 말림
- 컨베이어 운전을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미설치



〈벨트 컨베이어 끼임점〉



재해예방 대책

- 컨베이어의 구동롤러, 장력조정장치 및 벨트 컨베이어 등 작업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는 부위에는 방호덮개·방호울 등 설치 1
- 작업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드는 등 위험 우려가 있을 때 및 비상시 즉시 컨베이어의 운전을 정지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장치 설치
- 관리감독자를 통한 컨베이어 등을 사용한 작업 시, 작업 전 원동기·회전축·기어·롤러 등의 덮개, 울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 2



참고법령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5조(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방지 업무 등), 제87조(원동기·회전축 등의 위험방지), 제192조(비상정지장치)

재해사례

(화약류 폐기물)

화약류 폐기물 처리 작업 중 화재



폭발이 발생된 폐기물을 배출업체에 되돌려 보내기 위해 집게굴삭기로 암물 박스에 폐기물을 상차하는 과정에서, 집게로 작업장 바닥의 폐기물을 움켜질 때 집게와 작업장 바닥면과의 충격, 마찰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폐기물에 급속한 화재가 발생(사망 3명, 부상 5명)



재해발생 원인

- 군사용 화약류 폐기물의 부적절한 취급
 - 사고폐기물의 종류와 위험성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로 충격, 마찰에 민감한 폐기물을 집게굴삭기를 이용하여 상차하다 재해가 발생
- 전문처리업체가 아닌 일반처리업체에서 화약류를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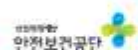
재해예방 대책

-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폐기물 취급방법 개선
 - 폐기물 처리작업 시 급변 사고와 같이 선행 폭발이 발생하여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로 파악된 경우에 충격·마찰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며, 배출업체를 통해 해당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특성에 적합한 방법이나 전문업체를 통해 처리
 - 신규 입고 폐기물의 경우 종류와 위험성 등 해당 물질의 물성을 배출업체를 통하여 철저히 확인하고, 배출업체에서 제공한 정보에 준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은 별도의 명문화된 절차(작업표준 등)에 의하여 실행
- 군사용 폐기물은 군에서 지정한 전문처리업체를 통해서만 해당 폐기물을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



참고법령 및 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5조(위험물질 등의 제조 등 작업 시의 조치), 제239조(위험물질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금지)



2018-2019년 1분기-4분기



중대재해사례 _ 산업재해사고 예방으로 돌입하다

압착진개차 적재함 청소 작업 중 끼임



재해 개요



압착진개차 적재함에 남아있던 폐 합성수지를 청소하기 위해 빗자루를 사용하여 청소작업을 하던 중 하강하는 파카와 적재함 사이에 신체가 끼임

재해 발생 원인



- 압착진개차 파카 유압장치가 고장난 상태에서 작업
- 압착진개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 수리 또는 점검 시 안전 지주 미사용

재해 예방 대책



- 압착진개차 정비·점검 및 이상 발견 시 즉시 수리
- 작업계획서 작성 및 이행
- 위험장소에 출입 시 안전 지주 사용

관련 법령

산업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5조(벌목작업 시 동의 위험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6조(벌목의 신호 등)
- KOSHA Guide(6-63-2011) 기계톱을 이용한 벌목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중대재해사례 _ 산재시방사고 예방으로 돌입시다!

2018-국회의대위-779



폐기물 운반중인 지게차가 경사로에서 덕트 보온재 재단작업 중인 작업자를 충돌



재해 개요



지하 3층에서 지상으로 폐기를 운반중인 지게차가 지하 2층 경사로 곡선구간에서 덕트 보온재를 펼치고 재단작업을 하던 작업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 포크 부위로 충돌

재해발생 원인



- > 차량 경사로에서 작업지휘자(유도자 등) 등의 배치 없이 덕트 보온재 재단작업 실시
- > 지게차 작업계획서 미작성

재해예방 대책



- 지게차 접촉 방지조치 철저
 - > 지게차 운반 작업 시 운전자 시야 충분히 확보하도록 화물적재
 - > 근로자와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가 접촉이 우려될 경우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배치
- 작업지휘자(유도자)를 배치한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운전자에게 신호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지휘자 지정

관련 법령

산안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작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9조(작업지휘자의 지정)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신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2조(접촉의 방지)
- 고용노동부 고시(제2015-47) 운반하역 표준안전 작업지침
- KOSHA Guide(M-185-2015) 지게차의 안전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 KOSHA Guide(G-100-2013) 지게차의 운전자의 안전교육훈련에 관한 기술지침





중대재해사례 - 산재사망사고 예방으로 출발시다!

2018-국회의대안-334



소화조의 음식폐기물 이송배관 교체 작업중 화재·폭발

재해 개요



하수처리시설 소화조에 투입하는 음식폐기물 이송배관 부분교체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1명 사망, 1명 부상

재해 발생 원인



-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사용
- 위험물(인화성 가스) 미제거 상태에서 절단(화기) 작업
- 폭발위험장소 미설정 및 미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미발급

재해 예방 대책



- 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소화조 내부의 메탄 등 인화성 가스를 완전 제거 후 배관 교체공사 실시
- 폭발위험 장소의 설정 및 관리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관련 법령

산업법,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KOSHA Guide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개조·수리 등)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9조(위험물 등이 있는 장소에서 화기 등의 사용 금지)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2호 정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 심사, 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안전작업허가, 제46조 안전작업허가 및 실시)



2021-교육혁신실-304



안전보건자료 활용가이드

안전보건자료를 만나는 6가지 방법

1 홈페이지

포털사이트에서 '안전보건공단' 검색 또는 주소창에 www.kosha.or.kr 입력



안전보건자료실



공단 발간 안전보건자료를 한 곳에 모았습니다.

예시) '프레스 작업안전' 자료 필요 시 '프레스' 검색

안전보건 e-Book



색인 및 키워드 검색 기능으로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찾아볼 수 있는 전자책입니다.

2 VR전용관

VR(가상현실)을 통해 입체적이고 실감나는 안전보건자료를 만나보세요.

포털사이트에서 '안전보건공단 VR' 검색 또는 주소창에 360vr.kosha.or.kr/main 입력



3 스마트폰 앱 (위기탈출 안전보건)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에서 '안전보건공단' 또는 '위기탈출 안전보건'을 검색하거나 QR코드 접속 후 앱 설치



10분 안전교육	10분 안전보건교육 기능 제공	다국어회화	간단한 대화, 안전보건 관련 대화를 13개 언어로 제공
안전보건자료	재해사례, 리플렛, 동영상 등 안전보건자료 제공	응급처치	응급처치방법 제공
VR전용관	정보제공형 VR 콘텐츠 제공	건강관리	건강 관련 자가진단과 근로자건강센터 운영 정보 안내
건설업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 교육기관 안내	* 이외 MSDS, 안전점검 정보 제공 홈페이지 링크	

10분 안전교육 작업 전 10분, 안전보건교육 앱으로 간편하게

- 1 '위기탈출 안전보건' 앱 실행
- 2 10분 안전교육 시작
- 3 안전보건자료 선택 후 교육
- 4 교육내역 확인 및 진송

4 미디어 현장배송 서비스

포스터, 표지 등 사업장에 필요한 안전보건자료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택배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약 2~3일 소요)

- * 자료 비용 | 무료 * 배송 비용 | 신청자 부담(착불)
- * 주소 | media.kosha.or.kr/main



5 유튜브(YouTube)

안전보건교육 동영상은 유튜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 채널명 | [안전보건공단안웹이](https://www.youtube.com/user/koshamovie) * 주소 | www.youtube.com/user/koshamovie



6 가까운 일선기관 방문

공단에서 발간한 다양한 인쇄물 등을 일선기관 방문 시 무료로 제공
*일선기관 문의: 1644-2275



다양한 안전보건자료, 마음껏 이용하세요



공단 홈페이지



안전보건자료실



월간안전보건



VR전용관



공단 앱 설치
(위기탈출 안전보건)



현장배송 서비스



유튜브



관할 일선기관 찾기

참고 3

지방관서 관할지역, 연락처

지방관서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서울특별시	02-2250-5897	서울특별시 중구·종로구·서초구 및 동대문구
서울강남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3465-8496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동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2142-8529	서울특별시 성동구·광진구·송파구 및 강동구
서울서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2077-6171	서울특별시 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 및 은평구
서울남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2639-227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강서구 및 양천구
서울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950-9823	서울특별시 성북구·도봉구·강북구·종량구 및 노원구
서울관악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서울특별시	02-3282-9025	서울특별시 관악구·구로구·금천구 및 동작구
중부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인천광역시	032-460-4428	인천광역시 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 및 옹진군
인천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인천광역시	032-540-7983	인천광역시 부평구·계양구·서구 및 강화군
부천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부천시	032-714-8790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의정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의정부시	031-850-7645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 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고양시	031-931-2849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고용노동지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경기도 수원시	031-259-0249	경기도 수원시·용인시 및 화성시
성남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성남시	031-788-1537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안양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양시	031-463-7355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 및 군포시
안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안산시	031-412-1983	경기도 안산시 및 시흥시
평택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기도 평택시	031-646-1186	경기도 평택시·오산시 및 안성시

강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도 춘천시	033-269-3583	강원도 춘천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경기도 가평군
강릉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도 강릉시	033-650-2521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양양군 및 고성군
원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강원도 원주시	033-769-0824	강원도 원주시 및 횡성군
태백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강원도 태백시	033-550-8627	강원도 태백시 및 삼척시
영월출장소 (근로개선지도팀)	강원도 영월군	033-371-6231	강원도 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부산광역시	051-850-6483	부산광역시 중구·동구·서구·사하구·영도구·남구·부산진구 및 연제구
부산동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051-559-6645	부산광역시 동래구·해운대구·금정구·수영구 및 기장군
부산북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부산광역시	051-309-1558	부산광역시 북구·사상구 및 강서구
창원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창원시	055-239-6592	경상남도 창원시·창녕군·함안군 및 의령군
울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울산광역시	052-228-1881	울산광역시
양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양산시	055-370-0931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 및 양산시
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진주시	055-760-6564	경상남도 진주시·사천시·합천군·거창군·산청군·하동군· 함양군 및 남해군
통영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남 통영시	055-650-1947	경상남도 통영시·거제시 및 고성군
대구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구광역시	053-667-6388	대구광역시 중구·동구·수성구·북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산시·청도군 및 군위군
대구서부 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대구광역시	053-605-9154	대구광역시 서구·달서구·남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포항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포항시	054-271-6837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구미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경북 구미시	054-450-3560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 및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 미국가산업단지
영주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영주시	054-639-1164	경상북도 영주시·상주시·문경시 및 봉화군
안동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팀)	경북 안동시	054-851-8036	경상북도 안동시·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광주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광주광역시	062-975-6349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 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제주 산재예방지도팀	제주특별자치도	064-728-7131	제주특별자치도
전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전주시	063-240-3394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익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익산시	063-839-0033	전라북도 익산시 및 김제시
군산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북 군산시	063-450-0535	전라북도 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목포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남 목포시	061-280-0172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 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여수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전남 여수시	061-650-0133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대전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 관리과)	대전광역시	042-480-6358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 계룡시 및 금산군
청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북 청주시	043-299-1317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괴산군·보은군·옥천군·영동군 및 증평군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남 천안시	043-840-4035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 및 예산군
충주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북 충주시	041-560-2873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 및 단양군
보령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충남 보령시	041-930-6149	충청남도 보령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및 부여군
서산출장소 (산재예방지도팀)	충남 서산시	041-661-5648	서산시·태안군

참고 4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관할지역, 연락처

지역본부·지사	위치	연락처	관할지역
서울광역본부	서울특별시	02-6711-2897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초구·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용산구·강남구
서울남부지사	서울특별시	02-6624-8740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동작구
서울동부지사	서울특별시	02-2086-8000	서울특별시 성동구·송파구·강동구·중랑구·노원구·강북구·도봉구·성북구
강원지역본부	강원도 춘천시	033-815-1010	강원도 춘천시·원주시·홍천군·인제군·화천군·양구군 및 횡성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동부지사	강원도 강릉시	033-820-2571	강원도 강릉시·속초시·동해시·태백시·삼척시·양양군·고성군·영월군·정선군 및 평창군
부산광역본부	부산광역시	051-520-0512	부산광역시
울산지역본부	울산광역시	052-226-0531	울산광역시
경남지역본부	경남 창원시	055-269-0552	경상남도(김해시·밀양시·양산시 제외)
경남동부지사	경남 양산시	055-371-7540	경상남도 김해시·밀양시·양산시
광주광역본부	광주광역시	062-949-8744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화순군·곡성군·구례군·담양군·장성군·영광군 및 함평군
전북지역본부	전북 전주시	063-240-8532	전라북도 전주시·남원시·정읍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완주군·진안군 및 무주군
전북서부지사	전북 군산시	063-460-3631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군산시·부안군 및 고창군
전남동부지사	전남 여수시	061-689-4917	전라남도 여수시·순천시·광양시·고흥군 및 보성군
전남지역본부	전남 무안군	061-288-0733	전라남도 목포시·무안군·영암군·강진군·완도군·해남군·장흥군·진도군 및 신안군
제주지역본부	제주특별자치도	064-797-7511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본부	인천광역시	032-510-0545	인천광역시
경기지역본부	경기도 수원시	031-259-7133	경기도 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안성시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031-828-1961	경기도 의정부시·동두천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및 강원도 철원군

고양파주지사	경기도 고양시	031-828-1961	경기도 고양시 및 파주시
경기서부지사	경기도 안산시	031-481-7521	경기도 광명시·안양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안산시 및 시흥시
경기동부지사	경기도 성남시	031-785-3324	경기도 성남시·하남시·이천시·광주시·여주시 및 양평군
경기중부지사	경기도 부천시	032-680-6513	경기도 부천시 및 김포시
대구광역본부	대구광역시	053-609-0552	대구광역시 중구·동구·북구·수성구, 경상북도 영천시·경산시·청도군 및 군위군
대구서부지사	대구광역시	053-650-6854	대구광역시 서구·남구·달서구·달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고령군 및 성주군
경북동부지사	경북 포항시	054-271-2022	경상북도 포항시·경주시·영덕군·울릉군 및 울진군
경북지역본부	경북 구미시	054-478-8022	경상북도 구미시·김천시·영주시·상주시·문경시·안동시·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봉화군·예천군·의성군·영양군 및 청송군
대전세종광역본부	대전광역시	042-620-565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
충북지역본부	충북 청주시	043-230-7113	충청북도 청주시·옥천군·영동군·보은군·진천군·증평군·괴산군
충북북부지사	충북 충주시	043-849-1000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음성군·단양군
충남지역본부	충남 천안시	041-570-3434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당진시·예산군·보령시·서산시·홍성군·서천군·청양군·태안군

